

2) 교사로서 교감 자격연수 대상자 : 가)와 나)의 조건을 갖춘 자

가) 중등학교 정교사 1급 또는 보건교사 1급 자격 취득 후 매년 2월말일 현재 3년 이상의 중등교육 경력이 있는 자

나) 교감 자격연수과정 응시대상자 순위명부 작성일 기준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(3급 이상)에 합격한 자 또는 임용일(교사 신규채용) 이후 한국사 관련 연수(합산 60시간 이상)를 이수한 자(「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」 제4조제6항 관련)

※ 교장, 교감 자격연수 대상자 중 강습명부작성일 기준, 아래 대상자는 부적격자로 경기도교육청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자격연수 대상자로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.

1. 정년 잔여 2년 미만인 자

2. 징계처분이 끝난 날부터 1년 미경과자

* 징계처분이 끝난 날: 징계처분(집행) 종료인(인사혁신처 인재개발과-1265(2022. 3. 16.))

3. 국제문화대학원대학교에서 비정상적인 교육과정을 거쳐 취득한 학위를 인사평정자료로 제출한 자
(다만, 부당 학위가점을 활용하여야만 자격연수가 가능하였던 교육공무원은 자격연수에 활용된 점수 상당의 대체평정점수를 취득한 경우 자격연수 등 진행 가능)

4. 4대 비위로 징계받은 자, 4대 비위로 징계 의결 요구 중인 자, 징계기록이 정년 내에 말소되지 않거나 말소 시 정년 잔여기간이 1년 미만인 자(교감의 경우 2017.10.01.부터 시행)

(교육부 교원복지연수과-656(2017.02.03.)호 근거, 경기도교육청 경교인 2017-7(2017.03.28.)호, 2017.10.01.부터 시행)

* 4대 비위: 금품·향응수수, 상습폭행, 성폭행(성희롱 등 성 관련 비위 포함), 성적조작

5. 2022.1.1.이후 음주운전(음주측정 불응 포함)으로 1회 이상 적발되고 징계의결 요구·처분을 받은 자(교육부 교원정책과-5224(2021.6.25.)호, 경기도교육청 경교인-22(2021.7.9.)호).

다. 교육전문직원으로서 평정 대상자

1) 장학(교육연구)사 중 매년 2월말일 기준 교육전문직원 경력 1년 이상인 자

* 교감 경력이 있는 장학(교육연구)사는 1년 미만이어도 평정 대상으로 서류 제출

* 임기제장학사는 근무성적평정 서류 제출 대상이나 승진평정 서류 제출은 하지 않음

2) 교장자격증을 소지하지 않은 장학(교육연구)관 중 매년 2월 말일 기준 교감자격취득 후 상응직 교육 경력(교감+교육전문직원) 3년 이상인 자 중

- 교감에서 교육전문직으로 전직한 이후 교육전문직 경력 1년 이상인 자

- 또는 장학(교육연구)관으로 승진한 이후 교육전문직 경력 2년 이상인 자

(경기도교육청 교원정책과-5603(2021.3.30.)호)